

現場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權限受任을 받은 同 事業所를 設置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出席委員 全員 贊成으로 原案可決하였습니 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 및 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蘭芝島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各 5件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하는 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투자관리관”을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으로, “교통국장”을 “교통기획관”으로 하며, “예산담당관”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투자관리담당관”을 “예산총괄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투자관리담당관”을 “예산2담당관”으로 하고, “재정1계장”을 “투자심사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업무) 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쓰레기 매립지 및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2. 안정화 사업
3.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방법 연구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